

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
서울특별시 성북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등
1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성 북 구
(기획예산과)

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등 1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99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 : 2024년 6월
제출자 : 성북구청장

1. 제안이유

「국가유산기본법」이 시행됨에 따라 성북구 조례 내의 문화재 명칭 및 관계법 인용조문을 일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행정절차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정비(안 제1조~제3조, 안 제5조~제10조)
- 문화재 명칭·분류체계 전면 개선으로 문화재 ⇒ 국가유산으로 명칭 변경
- 나.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등 현행화(안 제3조~제4조, 안 제9조)
- 「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」 상위법령 명칭 변경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및 근거

- 1) 「국가유산기본법」 제1조, 제3조, 제6조
- 2) 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협의사항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과, 세무1과, 부동산정보과, 도시안전과, 행정지원과, 문화체육과 7개 부서와 개정사항 협의

라. 기타

1) 입법예고

- 예고기간 : 2024. 4. 18.(목) ~ 5. 8.(수) [20일간]
- 예고결과 : 의견제출 없음

2) 입법예고 방법 :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

3) 신·구조문대비표 : 별첨

4) 비용추계 등 자료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
5) 인권/부패/성별/아동 영향평가

- 인권영향평가 결과 : 원안동의
- 부패영향평가 결과 : 원안동의
- 성별영향평가 결과 : 해당없음
- 아동영향평가 결과 : 해당없음

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

서울특별시 성북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등 10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제1조(「서울특별시 성북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전기·정보통신·소방시설·문화재”를 “전기·정보통신·소방시설·국가유산”으로 한다.

제2조(「성북구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3항제1호 중 “문화재”를 “국가유산”으로 한다.

제3조(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구 구세 감면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중 “「문화재보호법」 및 「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」”를 “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및 「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」”로, “문화재로”를 “국가유산으로”로, “문화재 보호구역”을 “국가유산 보호구역”으로 한다.

제4조(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제2호 중 “「문화재 보호법 시행령」 제36조”를 “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6조”로 한다.

제5조(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5호 중 “문화재”를 “국가유산”으로 한다.

제6조(「서울특별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제4호 중 “문화재”를 “국가유산”으로 한다.

제7조(「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2항제3호 중 “문화·예술·문화재”를 “문화·예술·국가유산”으로 한다.

제8조(「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2항 중 “문화재”를 “국가유산”으로 한다.

제9조(「서울특별시 성북구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성북구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제2항 중 “지정문화재”를 “지정문화유산”으로 한다.

제21조제4항제1호 중 “문화재위원”을 “국가유산위원”으로 한다.

제33조 중 “「문화재보호법」”을 “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

법률」”로 한다.

제10조(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」의 개정)

서울특별시 성북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3호 중 “문화재보호구역”을 “국가유산 보호구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붙임1]

신 · 구조문대비표

1.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노동 인권 증진 조례

현행	개정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	제2조(정의) ----- ----- ----.
1. “공사”란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와 개별 법령에 따른 전기·정보통신·소방시설·문화재 수리공사를 말한다.	1. ----- ----- 전 기·정보통신·소방시설·국가유산 -----.
2. ~ 4. (생략)	2. ~ 4. (현행과 같음)

2.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

현행	개정안
제11조(위원회의 구성) ①·② (생략)	제11조(위원회의 구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	③ ----- -----.
1. 민간기록물 업무 담당과장 및 문화재 업무 담당과장	1. ----- -- 국가유산 -----
2. (생략)	2. (현행과 같음)
④·⑤ (생략)	④·⑤ (현행과 같음)

3.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 조례

현행	개정안
제2조(문화재에 대한 감면) 「문화재보호법」 및 「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」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과 문화재 보호구역 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(「지방세법」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를 제외한다. 이하 같다)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.	제2조(문화재에 대한 감면) 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및 「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」----- 국가유산으로 ----- 국가유산 보호구역 ----- ----- ----- -----.

4.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

현행	개정안
제6조(수수료의 감면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제2호부터 제12호까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,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하며,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 증명 발급은 제외한다. 1. (생략) 2. 「문화재 보호법 시행령」 제36조에 따른 일반동산문화	제6조(수수료의 감면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(현행과 같음) 2. 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6

재의 등록신청 및 접수에 따른 증명	조-----
3. ~ 12. (생략)	-----
② 삭제	3. ~ 12. (현행과 같음)
③·④ (생략)	③·④ (현행과 같음)

5.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

현행	개정안
제2조(주소정보의 사용 확대)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주소정보를 사용한다.	제2조(주소정보의 사용 확대) ---
1. ~ 4. (생략)	-----
5. 국가지점번호: 법 제23조제2항에 규정한 외에 산악 등에 설치된 시설물 및 <u>문화재</u> 등의 위치표시	-----
6. (생략)	----- <u>국가유산</u> -----
	6. (현행과 같음)

6.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

현행	개정안
제4조(통합지원본부 설치·운영)	제4조(통합지원본부 설치·운영)
① (생략)	① (현행과 같음)
② 대책본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는 통합지원본부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	② -----

1. ~ 3. (생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국가기반시설, 다중밀집시설, 주요 관공서 및 <u>문화재</u> 등 화 재, 붕괴	4. ----- ----- <u>국가유산</u> ----- -----
5. ~ 8. (생략)	5. ~ 8. (현행과 같음)

7.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

현행	개정안
제11조(행정문화국에 두는 과) ① (생략)	제11조(행정문화국에 두는 과) ① (현행과 같음)
② 행정문화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	② ----- -----.
1. 2. (생략)	1. 2. (현행과 같음)
3. <u>문화·예술·문화재</u> , 도서관 지원, 생활체육, 여가지원, 문 화·체육시설의 설치 운영· 관리에 관한 사항	3. <u>문화·예술·국가유산</u> ----- ----- ----- -----
4. 5. (생략)	4. 5. (현행과 같음)

8.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현행	개정안
제10조(예산 지원 등) ① (생략)	제10조(예산 지원 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구청장은 해설사가 해설을 목적으로 성북구에서 운영하는 문화 시설, <u>문화재</u> , 자연 공원	② ----- ----- ----- <u>국가유산</u> -----

및 관광 명소를 방문하는 경우, 입장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.	----- -----.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

9. 서울특별시 성북구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

현행	개정안
제16조(자료 구입) ① (생략) ② 구청장은 경매 구입, 국가 또는 시·도 <u>지정문화재</u> 및 그 밖의 자료를 긴급하게 공개 구입 또는 현지 구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1조 자료평가위원회의 평가 심의를 거쳐 구입할 수 있다.	제16조(자료 구입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<u>지정문화유산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제21조(자료평가위원회) ① ~ ③ (생략)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평가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한다. 1. 자료의 감정에 조예가 있는 <u>문화재위원</u> 및 전문가 2. 3. (생략) ⑤ (생략)	제21조(자료평가위원회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----- ----- -----. 1. ----- <u>국가유산위원</u> ----- 2. 3. (현행과 같음) ⑤ (현행과 같음)
제33조(준용)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」,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, <u>「문화재보호</u>	제33조(준용) ----- ----- ----- ----- <u>「문화유산의 보</u>

법」,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공 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」,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각종 위원 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,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」를 준용한다.	<u>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--	--

10. 서울특별시 성북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

현행	개정안
제5조(설치장소)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. 1. 2. (생략) 3. <u>문화재보호구역</u> , 하천부지, 산지, 도로부지, 공원구역 등 개별법에 따라 관리 중인 부 지에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해당 부서와 협의하 여 설치하여야 한다. 4. 5. (생략)	제5조(설치장소) ----- ----- -----. 1. 2. (현행과 같음) 3. <u>국가유산 보호구역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4. 5. (현행과 같음)

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실공사
방지 조례 등 1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상위법(국가유산기본법) 개정에 따른 명칭 관련 조문 개정으로 비용 발생 요인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제1호 해당

3. 미첨부 사유

-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,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 미첨부

4. 작 성 자

기획예산과장 김 중 호